[유첨#1]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- 협력업체 법인 및 대표자용

비밀유지계약서

LG마이크론 주식회사 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㈜아이피에스 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(Photo Mask用 대면적 Dry Etcher개발) (이하 "계약제품"이라 함)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.

다 음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서는 "계약제품"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상호 제공받는 "비밀정보" (하기 제2조에서 명시함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비밀정보)

- 1. 이 계약에서 "비밀정보"라 함은 "계약제품"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(Back data 포함) 및 기타 상대방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을 말하며,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) "비밀정보"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: "비밀유지"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"비밀 정보"임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"비밀정보"의 공개 일자 및 장소,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 될 것.
 - 2) "비밀정보"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: "비밀정보"의 제공당시 "비밀정보의 제공자(이하 "정보제공자"라 함)가 "비밀정보"의 수령자(이하 "정보수령자")에게 동정보가 "비밀정보"임을 고지하고, "정보제공자"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(30)일 이내에 공개일자,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이의 요약본을 "정보수령자"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. 단, "정보수령자"가 "비밀정보"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수령일로부터 (10)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.
 - 3) 기타 "갑"과 "을"이 "비밀정보"라고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

제 3 조 (비밀유지의무)

- 1. "갑" 및 "을"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"비밀정보"를 "계약제품" 개발 및 제조목적 범위 및 기타 "갑"과 "을"이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- 2. "갑"과 "을"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"비밀정보"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
- 3. "갑"과 "을"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"비밀정보"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"비밀정보"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"갑"과 "을"은 "비밀정보"에 접근할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별도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자필로 체결하여, 본 계약 시점으로부터 (30)일 내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비밀유지 서약서에 대한 양식은 "갑"과 "을"이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기로 한다.

제 4 조 (계약기간)

- 1. 이 계약의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(3)년간 이며,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수 있다.
- 2.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, 상기 제3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또는 만료 후 (5)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 5조 (주의의무 정도)

"정보수령자"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"비밀정보"를 자신의 "비밀정보"를 관리하기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"비밀정보"의 예외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"비밀정보"로 취급되지 않는다.

- 1) "정보제공자"로부터 "비밀정보"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"정보수령자"가 이미 알고 있었 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
- 2) "비밀정보"를 제공 받은 때 또는 제공받은 이후 "정보수령자"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
- 3) "정보수령자"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
- 4) "정보수령자" 또는 그의 계열사가 "비밀정보"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
- 5) "정보제공자"가 "정보수령자"에게 "비밀정보"의 공개를 허용한 정보
- 6) 정부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
- 7) "정보제공자"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

제 7 조 (보증)

"정보제공자"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"비밀정보"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.

L'Internation Ci

제 8 조 (지적재산권)

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"계약제품"관련 특허권,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(이하 "지적재산권"이라 함)의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용 하는 것은 아니며,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.

제 9 조 ("비밀정보"의 반화)

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"정보제공자"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"비밀정보"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, 장비, 서류, 기타 정보를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"정보제공자"가 부담한다.

제10조 (손해배상)

- 1. "갑" 또는 "을"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"비밀정보"를 제3자에게 공개, 제공 혹은 누설하여 "정보제공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2. "갑" 또는 "을"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.

제11조 (기타 의무의 부과)

이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특정 기술 및 용역, 제조물에 관한 판매, 구입, 실시권 허용, 양도 및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 (양도 등의 금지)

"갑"과 "을"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, 하청,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13조 (계약의 수정, 변경)

이 계약이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다.

제14조 (분쟁해결)

- 1.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 당사자 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.
- 2.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 제기 상대방이 소속된 지역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"갑"과 "을" 이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09년 (3)월 (9)일

66긴->>

회사명 기재 : <u>LG 마이크론 주식회사</u>

주 소 기 재: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624번지

대표이사명 기재

대표이사 허영호 인

"을"

회사명 기재: ㈜아이피에스

주 소 기 재: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

대표이사명 기재

대표이사 문성

비밀유지 서약서

업체명 : ㈜아이피에스

사업자등록번호: 125-81-182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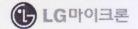
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

본 업체는 귀사의 용역/협력업체로서 귀사에서 (외주생산, 설계, 산학협력, 프로젝트....) (이하 "용역업무"라 함)을/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약 본 업체 또는 본 업체의 직원이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업체 및 본 업체의 대표자 (문상영)은 해당 직원과 연대하여 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귀사의 관련 규정 및 민,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- 1. 본 업체는 귀사의 정보보안 규정 및 귀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과 정보 보호를 위하여 귀사가 요청하는 기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- 2. 본 업체는 귀사에 상주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되는 귀사의 경영정보, 영업정보, 업무상 비밀, 기술정보 등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(이하 "영업비밀"이라함) 귀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, 이를 귀사와의 거래업무목적 이외의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- 3. 본 업체는 귀 사의 "영업비밀"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, 또한 귀 사의 정보보안 주관부서의 필요 시 내용 검색(메일 발송,보안검색 등)에 동의하며, 이에 최대한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다.
- 4. 본 업체는 귀사에서 용역업무수행 시 사용하는 전산 및 기타 일체의 장비를 귀사와의 거래업무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- 5. 본 업체가 전산장비를 귀사의 사업장 내로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귀사의 사전 승낙을 받을 것이며, 귀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이를 사용할 것을 보증합니다.
- 6. 본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귀사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경우, 귀사의 사업장 내로 반입된 본 업체의 전산장비에 저장된 귀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제반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할 것이며, 이에 대하여 귀사의 검사를 득한 후 전산장비를 반출 할 것을 서약합니다.
- 7. 본 업체는 귀사에서 상주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 업체 소속의 모든 직원이 귀사의 용역업무수행지 내에서 항시 출입증(방문증)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뒷장 계속 >



[유첨#2]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- 협력업체 법인 및 대표자용

- 8. (보호구역(제한구역 및 통제구역)에 대해서 귀사의 관련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삼가 할 것입니다.)
- 9. 본 업체가 본 서약을 위반하거나 귀사와의 거래관계에 따라 본 업체 소속의 직원으로 귀사에서 상주(혹은 비상주)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, 본 업체 및 본 업체의 대표이사(문상영)은 본 업체 및 해당 직원과 연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/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09년 3월 9일

서약인1:업체명:㈜아이피에스

사업자 등록번호: 125-81-18225 주소: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문상영

대표이사



